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5일 03시 29분



# 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[2022.6.1.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]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	3

## [2022.6.1.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]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

2021.11.09 조회수 464 담당부서 여수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61-692-1390

### 2022.6.1.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

2022년 6월 1일(수)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.

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(위장전입)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「공직선거법」제247조(사위등재·허위날인죄)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위장전입 제한기간 : 2021. 11. 11.(목) ~ 2022. 5. 14.(토)

※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: 2022. 5. 10.(화) ~ 5. 14.(토)

#### ▣ 위장전입 사례

-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
-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
-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
-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
- 기타 친인척의 집, 동료의 자취방·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

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(☎ 692-1390)

목록

이전글

GS칼텍스 예올마루 '지역예술인 페스티벌' 공연

다음글

순천 오네뜨 센트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

# Yeosu Web Contents

